필수 암기장(5판) 개정 추가자료

p. 28 ■ 대리와 사자 비교 표 아래 추가

■ 대리권과 본인의 권리귀속

		대리권	본인의 권리귀속
광의의 유권대리	유권대리	○	○
	복대리	○	○
광의의 무권대리	표현대리	×	○
	협의의 무권대리	×	×

p. 42 일부 수정

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

	소멸시효	제척기간
제도취지	사회질서의 안정, 입증곤란의 구제,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	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
대상	주로 청구권	주로 형성권
구별기준	'시효로 인하여'라는 표현 ○	'시효로 인하여'라는 표현 ×
기산점	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	권리가 발생한 때
소멸시기	시효완성으로 권리 소급적 소멸	제척기간 경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
소송상 취급	항변사항	직권조사사항
주장의 요부	○	×
중단・정지	○	×
포기제도	시효완성 후 포기 가능	불가
단축・경감	가능	불가
배제・연장	불가	

p. 45 아래 표로 대체

■ 소멸시효완성의 효과

권리소멸	**기산일로 소급효**
주장 요부	변론주의 적용(주장 필요) ※ 소멸시효 ┬ 기산점 : 변론주의 대상 ○ └ 기간 : 변론주의 대상 ×, 직권 판단
주장자	직접 이익 받는 자 (원용권자) ┬ 물상보증인, 담보물권의 제3취득자, 보증인 ○ 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, 후순위 담보물권자 ×
시효이익 포기	완성 후 포기 가능

■ 시효이익의 포기

성질	**처분행위** → 효과의사 ○ ┬ **처분능력, 처분권한** ○ 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함 → **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(判例 변경)**
방법	1. 당사자 : 당사자 or 대리인에 한정 → 상대방 : 진정한 채권자 2. 묵시적 : ① 일부변제 ┬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 승인 └ 가분채무에 일부 포기 가능 ② 기한유예의 요청
사전 포기 금지	사후 포기 가능
효과	상대적 효력 :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→ 보증인 ×, 물상보증인 ×, 제3취득자 ×

p. 48 맨 앞에 추가

■ 물권과 채권의 비교

구분	물권	채권
대상	사람 vs 물건	사람 vs 사람
내용	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(지배권)	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(급부)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청구권)
범위	모든 사람엔 주장 가능(절대권)	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(상대권)

p. 68 맨 앞에 추가

■ 구분지상권

	지상권	구분지상권
객체	토지의 上下	토지의 上下의 **특정 층**
목적	공작물이나 수목 소유	공작물만의 소유(**수목 ×**)
토지이용	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권 전면적 배제	목적되는 층을 제외한 **나머지 층 → 토지소유자 이용가능**

p. 68 분묘기지권 표 대체

■ 분묘기지권

성질	지상권 유사의 물권(관습법상 물권)
성립	1. 타인 토지 • **승낙형 분묘기지권**: 승낙을 얻어 분묘설치 • **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:** 승낙 없이 분묘설치 후, **시효취득**(20년간 평온, 공연한 점유 ○ → 등기 ×) ↳※ **장사법(2001.1.13.) 이후 인정 ×** 2. **양도형 분묘기지권**: 자기 토지 위에 분묘설치 후 → 토지 양도
공시	1. 분묘자체가 공시수단 → 등기 × 2. 평장, 암장 등 객관적 외형 존재 × → 인정 ×
효과	1. 사용권 ① 분묘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(주위의 공지 포함) ② 한계 :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설치 허용× ↳ 쌍분, 단분 × 2. 존속기간 : 분묘수호와 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 3. 지료 : ① **승낙형 분묘기지권**: ┌ 약정 有 : 약정대로(유상, 무상) → 승계인에게도 미침 └ **약정 無** : 원칙 → 무상 (판례변경) 예외 → 유상으로의 전환(지료 인정이 공평에 부합) → 전환 시부터 ② **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** ┬ 유상 └ 범위 : 청구 시부터 ③ **양도형 분묘기지권**: 자기 토지 위에 분묘설치 후 토지 처분 → 성립 시부터
소멸	분묘기지권의 포기 : 의사표시로 소멸(점유이전 ×)